

수출길, 초고속심사가 열어드립니다

수출길,
초고속심사가 열어드립니다





Contents

1.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란?	04
2.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왜 필요할까요?	04
3.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04
4. 초고속심사 이용 혜택은?	04
5.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04
6.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심사 대비 추가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05
7. 연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05
8. 초고속심사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05
9.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06

1.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란?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상표의 경우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왜 필요할까요?

- 수출을 위한 인·허가, 투자유치, 해외입점, 수출계약, 국내·외 분쟁대응,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는 특허권(상표권)확보가 필수입니다.
- 초고속심사를 통한 조기 권리확보로, 해외진출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25 10. 15.부터 특허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초고속심사 이용 혜택은?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초고속심사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1개월 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45일 이내 중간서류를 처리합니다.

심사 처리기간 비교				
권리	심사구분	1차심사	최종결과	합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2개월 ^{의말일}	4개월 ^{의말일}	6개월 ^가
	초고속심사	1개월	1개월	2개월
상표	우선심사	45일	30일	75일
	초고속심사	30일	30일	60일

5.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특허·실용신안은 ①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이거나 ②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표는 ①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②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③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심사 대비 추가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 특허 200,000원, 실용신안 100,000원, 상표 160,000원(1상품류 구분마다)으로 기존 우선심사와 동일합니다.

7. 연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2,000건(단, 대표출원인당 3건 제한)
 -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기초출원 관련 출원 : 2,000건
 - * 단, 올해는 각각 500건으로 운영할 예정('25. 10.~12.)
 - **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로 전환하여 절차 진행
- ※ 상표의 경우, 건수에 제한없이 초고속심사 신청 가능

8. 초고속심사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특허·실용신안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을 작성한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이때, 우선심사설명서(초고속우선심사) 작성 시, 초고속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특허로 홈페이지
(<http://patent.go.kr>)에서 제출



방문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에 제출



우편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상 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상표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제출방법은 특허와 동일).
- 이때,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 관련 고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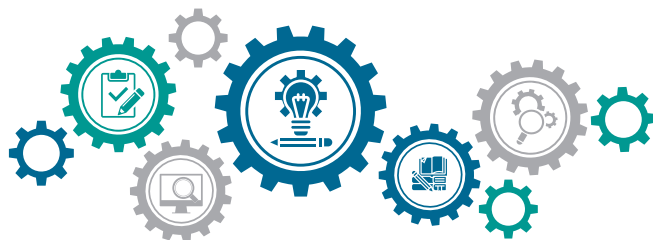
특허·실용신안

- 먼저, 수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실적이 있는 출원발명 또는 최근 3년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출원발명의 경우, ‘수출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출실적·수출계약·수출장내도 입증서류 등
 - 3년 내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지원사업*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첨단기술+조약우선권기초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항목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단기술과 관련해서는,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또는 관련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서류 없이 첨단기술 출원으로 인정

※ 첨단기술은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시에만 해당, 신규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조약우선권기초출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수리관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 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 ▶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수리관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PCT 수리관청에 출원 시 납부한 출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체 증명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심사관련통지서 등

* 단, PCT 수리관청이 대한민국인 경우 생략이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생략 가능



상 표

- 먼저,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인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실적 수출계약 입증서류 등 수출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3년 내 수출관련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 조약우선권기초출원인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해당 국가의 출원사실 증명서류 및 해당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마드리드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

2025년 10월 15일 새로운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기업의 수출길,
초고속심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